

지침 공고: 미국토안보국(DHS)이 재정지원하는 기관들 영어 미숙련자들에게 의미있는 서비스 제공



미국토안보국(DHS)은 DHS 의 재정적 지원들을 받는 기관들(예를 들어 DHS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을 위하여 연방관보에 새로운 지침을 공고했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지침의 목적은, 1964 년 제정된 민권법 제 VI 편에서 요구하는 책임, 즉 DHS 지원을 받는 활동들을 수행하는 기관들은 영어 미숙련자들에게 의미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고 시행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제 VI 편과 그 시행 규정은 연방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들이 그들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인종이나 피부색 또는 국적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 대우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과 규정의 종래 해석은 영어 미숙련자들에게도 의미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외국어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오랫동안 존재해 왔지만, DHS 의 재정 지원을 받는 수 천개 기관들과 단체들이 그러한 요구를 준수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DHS 는 마침내 연방관보에 현재 공고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http://www.gpoaccess.gov/fr/>. 앞으로 30 일 동안 저희들은 <http://regulations.gov> 을 통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그 후 지침을 최종화하긴 위한 발의를 할 것입니다.

DHS 는 저희들과 협력하여, 테러활동 예방, 보안 강화, 국경 방위 및 관리, 미국의 이민법 집행 및 행정, 사이버 공간 보호, 재해시 유연한 조치 등의 극히 중요한 국토 보안 의무를 수행하는 기관들과 단체들을 재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과 서비스들을 영어권 사람들은 물론 영어 미숙련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국토안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DHS 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들과 단체들은 영어 미숙련자들도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활동의 혜택을 받도록 반드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재정지원을 받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 비상관리 기관들, 소방서와 경찰서, 그리고 그밖에 다른 정부 또는 비정부 부서들에 모두 적용됩니다. 재정적 지원 이외에 교육 훈련이나 컴퓨터 장비 등의 서비스나 장비 지원을 받는 기관들도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기관들 중 많은 경우, 주정부와 지방정부 부서들과 비정부 단체들을 포함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역시 연방 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유사한 영어 미숙련자들을 위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DHS 지침은 2002 년 미법무부가 선두로 다른 기관들이 공고한 지침과 매우 유사합니다.

LEP 지침에서 설명했듯이, 통역이나 번역 등 언어 서비스를 언제 그리고 어떻게 제공하는가 결정하는데 있어서, 해당 기관은 첫 단계로 아래 네 가지 요소를 검토하는 개인화된 평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1. 예상되는 프로그램 대상 영어 미숙련자들의 숫자 또는 전체 퍼센티지;
2. 영어 미숙련자들을 얼마나 자주 접하는지;
3. 제공되는 프로그램, 활동, 또는 서비스의 성격과 그 중요도; 그리고
4. 수혜 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 및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

이 네 가지 단계 검토는(미법무부의 2002 년 영어 미숙련자들을 위한 지침을 처음 소개) 수혜자의 제 VI 편 준수를 평가하는데 DHS 가 사용할 기준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국토안보국 민권 및 시민자유 부서는 DHS 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수혜 기관들에게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적 지원을 해드립니다. 자세한 연락 정보는 아래 참조.

저는 DHS 산하 기관들과 DHS 가 재정지원하는 다른 기관들 및 단체들, 그리고 그들이 시행하는 프로그램들의 최종 개인 수혜자들 및 지역사회들과 협력하여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활동들을 비영어권 수혜자들도 혜택을 보도록 제공하는 의무를 수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국토안보국 자체 프로그램들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에도 언어 지원이 되도록 DHS 전부서들과 협력할 것이며, 국토안보국은 새 이민자들과 그밖에 다른 영어 미숙련자들이 영어를 배우도록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마고 슈렝거
민권 및 시민자유 부서

연락처:

이메일: crcl@dhs.gov

전화: 지역: 202-401-1474, 수신자 부담: 1-866-644-8360
지역 TTY: 202-401-0470, 수신자 부담 TTY: 1-866-644-8361

우편주소: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Office for Civil Rights and Civil Liberties
245 Murray Lane, SW
Building 410, Mail Stop #190
Washington, DC 20528